

## 행정기관명

수신자  
(경유)

제 목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

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려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|-----|------|--|
| 예정된 공표의 제목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당사자           | 성명(명칭)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              | 주소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     |  |
| 의견제출          | 제출처    | 기관명     |         | 부서명 |  | 담당자 |      |  |
|               |        | 주소      |         |     |  |     | 전화번호 |  |
|               |        | 전자우편 주소 |         |     |  |     | 팩스번호 |  |
|               | 제출기한   |         | 년 월 일까지 |     |  |     |      |  |

### <의견제출 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신명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 팩스번호( 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